

군급식기본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 군급식위원회와 각 세대별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군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II. 검토의견

가. 식재료 조달 업무 위탁 대상 중 “국가” 삭제(안 제7조제3항)

- 안 제7조제3항¹⁾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의 국가사업(식재료 조달 업무)에 대해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규정임. 권한·업무의 위탁이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된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함²⁾.
- 그런데 안 제7조제3항은 “국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동인격으로 볼 수 있는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이 국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법문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고, “국가”를 위탁의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입법례도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안 제7조제3항에서 “국가”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1) 안 제7조(식재료) ③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입·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임은 원 권한자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위탁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된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민간위탁이란 수탁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p.726, 2024.5.]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조(식재료) ③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u>국가, 지방자치단체</u>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식재료) ③ 전·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은 <u>지방자치단체</u>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나. 품질·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안 제16조)

- 안 제11조³⁾는 각군 부대의 장,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⁴⁾는 만약 군급식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등을 군급식에 사용하면 이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임. 반면, 군부대가 군급식을

- 3) **안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 군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 4) **안 제1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직접 운영하는 경우 각군 부대의 장이나 군급식운영관계관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죄⁵⁾로 처벌받거나 「군인사법」⁶⁾ 등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직접 형사처벌 하는 예가 적은 이유는 「형법」상 포괄적 규정이 있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학교급식법」⁷⁾도 급식의 품질 및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관계자는 처벌하지 않고 학교급식공급업자만 처벌하고 있어, 개정안은 같은 취지의 타법률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a) 양질의 군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⁸⁾를

5)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4.10. 2013도229]

6)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7) 「학교급식법」 제23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려하면 군급식 업무를 부대가 직영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등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b) 동일한 업무·동일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공무원(1년 이하의 징역)과 민간위탁업자(7년 이하의 징역) 간 처벌의 차이가 크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점, (c)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동등하게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는 점⁹⁾ 등을 고려할 때,

「군급식기본법」에 따른 군급식 운영에 있어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각군 부대의 장이나 군급식운영관계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해 향후 검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기타 검토사항

- 그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와 협의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 개정안에서 다수 사용하는 “각 군부대”를 “각군 부대¹⁰⁾”로 수정함.
- 안 제5조제1항 “전군”에 한자(全軍)를 병기함.
- 안 제5조제1항의 “제대별”을 “사단급 이상 부대의”로, 안 제10조

8) [군급식기본법(대안) 제안이유 중]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9) 「병역법」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0)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군급식위원회”를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로 수정함.

- 안 제7조제4항을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

(전문위원 김 성 완)